

KPMG Tax

Korean Tax Update

November 2018, Issue 53

[조세뉴스]

국세청,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전문보기\]](#)

'17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과, '19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8년 대비 2%-4%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7 과세연도의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여 세정 지원할 계획임.

국세청,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전문보기\]](#)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신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3,000\text{m}^2$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호별 m^2 당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임. 가격반영률을 기준 적정가격의 80%에서 82%로 2%포인트 상향함에 따라, 기준시가 예상변동률이 오피스텔과 상가건물 각각 7.52%, 7.57%로 올해 인상률(3.69%, 2.87%)의 2배를 넘을 것이라 추정됨.

국세청, 고액 자산보유 미성년자 등 변칙증여 혐의자 225명 조사 착수 [\[전문보기\]](#)

최근 들어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하면서 미성년자 등 연소자의 고가자산 형성과 정당한 납세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부동산·예금·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자 등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225명을 대상으로 국세청은 11.28(수) 세무조사에 착수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과 규제 완화를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전문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를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함. 첫째, 현행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첨단기술·제품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술·제품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첨단기술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첨단기술 제품 매출액 조건과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조건 또한 실정에 맞게 완화하며, 더불어

기업 집적공간인 지식산업센터의 조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관련 입지 규제를 완화할 예정임.

[예규·판례]

[판례1] 물류시설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직접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10.04 선고 2018 두 46643 판결

-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2항은 원고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되, 같은 법 제178조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데, 추정 사유로 물류시설을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와 이를 물류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물류시설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임대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직접 사용'의 의미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으로 용도에 맞게 물류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원고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쿠팡과의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적어도 임대창고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토지와 건물을 구 물류정책기본법 등이 정한 물류사업 중 하나인 물류시설운영업(창고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례2] 장기차입금 고정이자율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 두 39573 판결

- 문학산터널 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주주인 군인공제회로부터, 1999년경 사업 비조달을 위해 연 13.06%의 고정이자율, 만기 약 18년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약정 고정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계속 지급해 온 사안에서, 이 사건 차입의 약정기간 동안 시중금리나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 대체로 하락하고 있었고, 가장 높은 시중금리가 연 5.81%에 불과했던 점, 이 사건 차입 약정에 원고의 조기 상환을 금지하는 어떠한 제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시중금리가 장기간 낮게 형성되었을 때 원고가 다른 금융업자로부터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받아 조기 상환을 하거나 이를 근거로 군인공제회를 상대로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입 이자율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례3]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 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 두 50031 판결

-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부동산임대사업자들에게 분양된 경우, 그 임대사업자들이 원고에게 이사건 각호실을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할 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는 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축자인 원고가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경감받은 취득세는 이 사건 추징규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판례4] 명의신탁된 주식을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 두 49376 판결

- 과점주주인 원고가 명의신탁해두었던 주식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자 위 주식의 취득으로 주식지분율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지분증가분에 대한 간주취득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소외인은 이 사건 주식의 인수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해 준 자에 불과하고,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2015. 12. 30. 전후로 원고의 주식 소유비율은 동일하여, 위 명의개서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말하는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례5]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및 조세조약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따른 실질귀속자 판단기준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 두 33008 판결

- 원고가 파라마운트 영화 등의 국내배포와 관련하여 헝가리 법인(VIH)에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한·헝가리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VIH의 원고와의 계약 체결과 관련 업무 수행 내역, 관련 비용 지출과 자금 운용 내역을 비롯한 사용·수익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VIH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용료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될 수 없고, 바이어컴 그룹의 헝가리 내 사업 연혁, 장기간의 사업활동, 인적·물적 설비, 배포권과 사용료 소득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등을 고려하면, VIH는 정상적으로 미디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충분한 실체를 갖춘 법인으로서 그 명의의 배포권과 그에 따른 사용료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바, 소득의 귀속에 명의와 실질 사이에도 괴리가 없어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더라도 한·헝가리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심판례1] 주택재개발사업의 환지처분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원시취득 세율 적용 여부

조심 2018 지 1131, 2018. 10. 01.

- 「지방세법」 제6조제1호에서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환지(換地)의 의미는 토지의 이용가치를 전반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 내 토지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보유하는 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새로이 구획된 토지를 할당하기 위하여 분합(分合) 및 교환(交換)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환지처분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원시취득이 아닌 교환에 따른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임.

[심판례2] 합병소멸법인인 홀딩스 자회사의 사업활동을 위한 자문용역 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쟁점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조심 2018 서 1942, 2018. 10. 16.

-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이 당초부터 단순히 지분 취득을 목적으로 설립된 SPC에 불과하고, 실제로도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다른 사업활동이 전혀 없이 단기간에 폐업(흡수합병)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주식취득을 위해 제공받은 자문용역 관련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 관련 세액이 아니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피합병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은 서비스/주식 및 지분취득·투자로 과세사업자로 되어 있는 점, 실제로 청구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쟁점 비용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비용을 지출한 사실에서 동 자문용역이 피합병법인의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비용이 청구법인의 주식인수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고, 피합병법인이 과세매출이 없이 청구법인과의 합병으로 소멸하기는 하였으나 존속법인인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실에서 청구법인의 지분 취득과 자금조달을 위한 자문용역에 지출된 쟁점비용이 궁극적으로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활동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심판례3] 이월된 중소기업 외 법인의 석박사 인건비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최저한세 적용 여부

조심 2018 구 2378, 2018. 10. 17.

- 2008 ~ 2011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쟁점이월공제액을 2012 ~ 2015사업연도에 공제받을 경우 그 법인세 납세의무는 2012 ~ 2015사업연도 각 종료시에 성립되는 것이어서 개정 조특법에 따라 쟁점이월공제액을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개정 조특법 제132조 제1항 제3호의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 대한 석박사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취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충분히 세제지원하고 있어 다른 세액공제와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기업의 석박사 인건비 해당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

최저한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고 보이는 점, 개정 조특법 제1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석박사인건비 해당액에 대하여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생긴다고 하여도 그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석박사인건비 해당액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어서 이를 반드시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세법의 해석·적용이라고 하기는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이 월공제액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됨.

[심판례4] 할인분양으로 인한 미회수 공사 채권이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8중2288, 2018. 10. 17.

-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분담금을 증액하는 관리처분계획변경 또는 조합의 연대보증인으로 등재된 조합의 임원에게 강제집행 등을 통한 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상가 할인분양에 따른 공사미수금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면 상가의 할인분양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일부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아파트재건축사업은 지분제사업과 책임분양제사업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일반 분양분의 성과에 따라 공사대금의 회수 여부가 좌우되는 것이어서, 일반 분양분에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인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미회수로 귀결되는 사업구조로 공사대금(채권)을 임의포기는 발생할 수 없고, 채권의 조기회수 및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할인분양을 실시한 것으로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저가분양에 따른 조합의 손실을 이유로 공사비를 수령하지 아니한 채 대손처리한 것은 채권의 임의포기로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판례5]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의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 2018 지 1293, 2018. 10. 24.

- 청구법인은 지방소득세에 대한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이므로 2011사업년도분 및 2012사업연도분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2018.7.12.에 부과한 처분은 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의 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지방소득세는 2015.7.31.에 세무서장이 해당 법인세를 경정함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제척기간은 세무서장이 부과한 법인세의 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례6] 외국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출자자분이 외국법인 사이의 합병으로 인하여 외국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이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8 부 0071, 2018. 10. 24.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가목 등에서 외국법인의 경우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법인 사이의 합병에 따른 주식 등의 이전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하는 정책적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외국법인 간의 합병에 따른 국내자산의 이전을 내국법인 간의 합병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과 달리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 조세조약은 원칙적으로 체약국 사이에 과세권이 문제될 때 이를 조정함으로써 이종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이어서 이 건과 같이 국내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약규정을 참작하여 국내 세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합병으로 인하여 쟁점출자자분의 소유권이 피합병법인에서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것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가목의 주식 등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례7] 쟁점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8 전 2445, 2018. 10. 25.

- 청구인이 제출한 디자인샘플 등에 의하면 일반적인 제품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에 불과 할 뿐 이를 넘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부족한 점, 청구법인 개발한 디자인에 대한 특허출원 건수가 소수에 불과하여 실용신안 등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의 소유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한 이후에도 경정내역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정당한 세액에 대하여 다시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고유디자인의 개발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례8] 쟁점프로젝트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아 발주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조심 2018 서 0183, 2018. 10. 25.

- 이 건 심판청구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확정된 형사재판의 사실판단과 달리 청구법인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OOO는 공동프로젝트의 통제와 뇌물제공의 통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실제 거래처 대신에 용역수행 능력이 없는 청구법인을 임의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프로젝트 수주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법원 판결에서 뇌물 수수 및 공여죄가 확정된 점, 위 뇌물 사건과 관련되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OOO컨소시엄은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어 1년간 관급공

사 참여기회를 박탈당하였던 점 등에서 이 건 공동수급체는 수주가점만을 얻기 위한 OOO와 수수료 편취와 관급공사 사업실적을 쌓기 위한 청구법인 간 공모로 이루어진 '비정상적 컨소시엄'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대하여 '정상적인 조합 성격의 컨소시엄'을 전제하는 공동수급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프로젝트 와 관련하여 발급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례9] 전문의약품 설명회 개최에 소요된 쟁점비용이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조심 2017 서 3071, 2018. 10. 29.

- 청구법인은 쟁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지출한 비용이 의사들에게 전문의약품을 설명하면서 부득이하게 지출한 식사 비용이기에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의 쟁점설명회 개최비용을 지출한 데 대해 단 몇 건의 샘플만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을 뿐이고, 음식점의 위치 등으로 보아 이동시간과 식사시간을 제외하면 제품에 대하여 설명할 시간이 없어 보이는바,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의료전문가들을 상대로 하여야 하기에 불가피하게 해당 장소에서 쟁점설명회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인정하기 어려운 점, 특정 영업사원의 영업활동 내역을 보면 영업사원별로 담당 병원 및 약품을 정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쟁점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판매부대비용은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인바, 쟁점비용과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전문의약품의 판매액이 직결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설명회비용을 접대비로 봄이 타당함.

[심판례10] 사업협약이 책임있는 사유로 해지됨에 따라 지급한 이행보증금의 손금 산입시기를 '지급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8 서 2936, 2018. 10. 31.

- 쟁점컨소시엄의 과실이 있었던 때에 시공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지급의무를 가지는 쟁점컨소시엄에 참가한 청구법인의 손해배상채무도 동일하게 발생하였다며 볼 수 있으나, 쟁점컨소시엄과 시공사는 쟁점금액을 포함한 쟁점협약이행보증계약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의 금액뿐만 아니라 그 성격에 대하여도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도 대법원에서 소송계류 중으로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부담하게 될 금액은 불확정 된 상태인 점, 쟁점금액을 포함한 협약이행보증금을 수령한 시공사가 이를 법인세 신고 시 익금으로 산정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은 이를 지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관련소송이 확정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례11] 국내 정기예금금리에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리를 더한 것을 정상이자율로 하여 과소수취한 이자수익을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7 부 0311, 2018. 11. 2.

- 쟁점대여거래는 소재지 국가가 다른 사업자 간의 국제금융거래인데 처분청이 정상가격 산정 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금리를 사용하지 않고 국내 은행의 원화정기예금이자율을 사용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잉여자금을 가진 사업자가 이를 은행에 예금할지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할지 여부는 그 거래를 결정할 당시의 다양한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표면적으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은행 예금거래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가격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거래 시 이자수익을 과소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예규1]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하는 경우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10, 2018. 10. 1.

-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제2호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예규2]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이 회생절차개시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주식의 평가 방법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79, 2018. 10. 12.

- 유가증권시장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의 기간 중 회생절차개시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 완전자본잠식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이 포함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예규3] 가맹점 등에 적립하여 주는 마일리지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59, 2018. 10. 17.

- 화장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가맹점 및 방문판매특약점(이하 "가맹점 등")이 사업자로부터 상품 구입시 구입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추후 가맹점 등이 사업자로부터 상품, 판촉물 등의 재화를 공급받으며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 나목에 따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예규4] 본인 자금으로 재배정받은 실권주 등이 상장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1, 2018. 10. 31.

-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하지 않고, 재배정 실권주 및 제3자 배정 유상신주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5년 이내 상장되는 경우 (구)상증법상 포괄주의(제2조, 제42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예규5] 특수관계가 아닌 자 간의 고·저가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증여일 판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6, 2018. 11. 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단서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이 규정하는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100분의 30이상 변동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고·저가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30% 이상 변동하는 경우 증여일은 매매계약일임.

[삼정 KPMG 조세본부 소식]

[기고] BUSINESS Watch,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기사보기]

Tax 본부 김경조 S.Manager(02-2112-3415)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coe@kr.kpmg.com

© 2018 Samjong KPMG.,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